

연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[2012. 8. 10] 조례 제3058호

일부개정 2018. 12. 13 조례 제3526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8. 12. 13>

제2조 삭제 <2018. 12. 13>

제3조 삭제 <2018. 12. 13>

제4조(사실조사 의뢰) 군수가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(이하 “관련 기관 등”이라 한다)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12. 13>

1.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
2.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있어 예산, 인력 등이 절감되는 경우
3.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
제5조(관련 기관 등의 선정) 군수는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2. 13>

1.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, 장비 및 기술수준
2.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
3. 가족친화환경 조성 및 양성평등 고용 준수 여부 등

[제목개정 2018. 12. 13]

제6조(협약의 체결) ① 군수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2. 13>

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, 업무의 범위, 협약기간, 비용, 책임과 의무, 협약의 해지,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8. 12. 13>

제7조(관련 기관 등의 의무) 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,

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외 사용,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

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법령,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군수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
[제목개정 2018. 12. 13]

제8조(지도·감독) ① 군수는 의뢰받은 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, 지도·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의 보고, 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에는 문서로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9조(협약의 해지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12. 13>

1.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이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
2.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

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. 12. 13 조례 제3526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